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89

발의연월일: 2025. 4. 24.

발 의 자:김민석 • 윤준병 • 윤종군

서삼석 · 김 현 · 이원택

김남근 • 박지원 • 김기표

이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및 그 시설의 직원, 부랑인·노숙인·미신고시설 수용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자,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.

그런데 의료기관, 산후조리업, 학교의 경우 종사자·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·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지만,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핵검진이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음.

이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의료기관, 산후조리업, 학교 등 종사자·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,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호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). 법률 제 호

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

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 는 일부

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는 제26조제2호의2에 따라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6조(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| 제26조(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구가 부담하는 또는 시・군・구가 부담하는 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경비) -----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부담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2의2.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 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3. ~ 7. (생략) 3. ~ 7. (현행과 같음) 제28조(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제28조(국가가 부담하는 경비 및 보조금) ①・② (생략) 보조금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국가는 제26조제2호의2에 <신 설> 따라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 또는 시・군・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.